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97

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정점식·지성호·권명호

서일준 • 이종성 • 김희국

김용판 · 정운천 · 백종헌

유경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, 농업·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,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'농업·농촌' 외에 '어업·어촌' 역시 특별적립금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 사업 및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에는 '농업·농촌'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'어업·어촌'이 그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별적립금 용도에 '어업·어촌에 대한 이해증진' 및 '수산물 소비촉진'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13호 및 제42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3호 중 "농축산물"을 "농축산물 및 수산물"로 한다.

제42조제4항 중 "농업·농촌"을 "농어업·농어촌"으로, "농축산물"을 "농 축산물 및 수산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사업의 범위) 1. ~ 12.	제36조(사업의 범위) 1. ~ 12.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13. 유휴공간을 활용한 <u>농축산</u>	13 <u>농축산</u>
물 판매・유통 지원 및 놀이	물 및 수산물
· 운동 · 휴양 · 공연 · 전시시	
설의 설치・운영	
14. • 15. (생 략)	14.・15. (현행과 같음)
제4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~ ③	제4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	4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,	
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	
인력 장학사업, <u>농업·농촌</u> 에 대	<u>농어업·농어촌</u>
한 이해증진과 <u>농축산물</u> 소비	<u>농축산물 및 수산물</u> -
촉진사업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	
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	
지원,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	
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	
충당한다.	
⑤・⑥ (생 략)	⑤・⑥ (현행과 같음)